

2004년 1월 19일 여성팀 세미나

목차

A. 여성팀 법안 논의 제안 사항

<아래 참고 자료>

B. 법제정소위원회의 총칙편 수정안

C. 여성장애인 관련 법안 및 현재 각 규범 내용

a. 열린 넷 안

b.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안

c. 비와코 2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 여성장애인 편 목표

d.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방콕회의 초안 여성장애인편 안

## A. 여성팀의 법안을 위한 논의 제안 사항

1) 총칙편에

제1조 (목적) 혹은 제3조(차별)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삽입 여부와 문구?

2) 차별금지편에

a. 각 차별영역 편성방식에 대한 여성팀 시각에서의 적절성과 추가 영역 여부

(별지- 장애인법연구모임 카페 차별금지팀 2003. 11.21. 참조)

1)노동-남용현, 양병호, 김주현 등

2)교육-김주영, 양병호, 김주현 등

3)이동권-배용호 등

4)시설접근권-배용호 등

5)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김철환, 양병호 등

6)재화와 용역(의료포함)-김동원 등

7)가족·성 및 사생활-조은영, 김광이, 김주현 등

8)정치·시민생활-안선영, 이남진 등

9)문화·예술(미디어 포함)-정하균, 조은영 등

10)사법행정절차-윤정기 등

b. “가족, 성 및 사생활”의 적절성과 수정안?

c. 각 영역(장)별 편성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성팀의 안을 넣기에 적절하겠는가?

d. 총칙편 외에도 각 영역(장)별의 (~에서의 차별금지)에 성 차별 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ex)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1.~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하여야 한다. 1.~ 차별로 간주한다 1.” 고용과정에서 장애인의 성을 이유로.....“

제22조(정의) “고용”이라 함은~ . “모집과 채용”이라 함은~

제23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제26조(고용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의 유형) .....유형 나열(차별사례를 명문화 한 형식)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on the right margin, including dates like 2003, 2004, and names like 김주현, 양병호, 김광이, 조은영, 윤정기, and a circled number 11.8.

3) 여성장애인의 장애 넣어야 할 고유 사항? - 아래의 "...해당하는 사항

( 열린넷과 연구소는 "성"장으로 표현하고 있음)

(여성팀 세미나 내용 외에 아래 여성장애인 관련 법안과 규범 참조)

(ex) 현재 차별금지법의 편성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제1.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모든 사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성(여성장애인 임)을 이유로 모부성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 (정의) 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② "모 부성권"이라 함은~

③ .....(넣어야 할 사항)

제3.(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4. (...)

B. 총칙기구팀 수정안에 대한 법제정소위원회 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sup>구제</sup>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 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정)“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인 차이로 인하여 장·단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개인적 및 사회적 장벽(조건, 제약)을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입고 있거나 과거에 장애를 입은 적이 있는 사람, 현재의 질환(요인, 장애) 등으로 인해 장래에 장애를 지닐 것으로 예견되는 사람을 말한다 (등록 여부)
3.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장애인을 보조하는 자, 동행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를 말한다
7. “입법·행정·사법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함은 법원, 행정심판기관, 검찰, 경찰 등 재판, 조정 및 수사 등의 직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차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사람과 구별하여 다르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자와 확실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그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차별행위를 부추기게 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배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경우
  5. 장애인 관련자에 대해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차별행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일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본다

### 제4조(차별금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도 아니 되고 차별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공포 후에 이 법에 반하는 법령, 조례 등을 제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 규칙 등은 시급히 개정 또는 무효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차별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장애인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신설 제7조(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 이현준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이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생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장애인은 선택권을 가진다. 이를 존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정책은 이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신설제안) 제8조(사용자 및 사업주의 의무)

※ 이상의 총칙을 토대로 구성될 영역별 차별금지조항에 대해서

1. 차별금지 영역

- 노동, 교육, 지역생활, 이동 및 건축물, 정보 및 의사소통 접근(정보통신으로 제안되었음), 성, 정치, 재화·시설·용역, 사법절차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기존법안을 보충하면 됨
- 생존권/ 사회보장권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

C. 여성장애인 관련 법안 및 현재 각 규범 내용

a. 열린네트워크 안

제9절 성

제18조 [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여성장애인을 장애 또는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여성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불임수술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불임수술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차별행위로 본다.

제19조 [차별행위의 간주]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폭행, 협박은 차별행위로 본다.

b. 연구소 안

제2장 장애인의 권리 및 차별금지

가. 지역생활의 권리 및 차별의 금지

제10조(성, 혼인, 출산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은 성을 가진 동등한 개인으로서 존중을 받는다.

② 장애인은 성, 혼인, 임신 및 출산에 관련해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③ 성, 혼인, 출산과 관련된 차별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장애인의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권리 또는 성에 대한 권리를 빼앗거나 무시하는 경우
2. 혼인 또는 이성과의 교제에 대한 조건으로서 장애인에게 피임, 낙태 또는 상속포기를 강요하는 경우
3.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임을 강요하는 경우
4.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사의 진단이나 권고없이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5. 장애인에게 자궁적출 및 단종(斷種)을 강요하는 경우

c. 아태장애인 비와코 새천년행동계획안 여성장애인 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

<3.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실천(Action required to achieve targets)>

1.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 교육, 훈련 및 고용에의 동등한 접근과 성적인 그리고 다른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대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2. 정부, 민간단체, 자조단체들은 여성장애인의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태도, 역할모델, 그들의 발전기회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3. 정부는 여성장애인들간에 적절한 성(gender)관련 정보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역적, 국가적, 준국가적 수준의 기구의 설립을 촉진할 수 있다. 그 정보는 국제적 문서와 국가적 입법에 대한 정보도 제한없이 포함하도록 한다.
4. 장애인 자조단체들은 여성장애인이 지방, 국가, 지역적 수준의 조직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자조단체들은 여성장애인이 회의, 워크숍, 세미나에서 적어도 그들의 대표단의 1/2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여성장애인은 자조단체들에서 제공되는 운영과 일반 주제를 가진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7. 정부, 민간단체, 자조단체, 후원기관들은 성차별문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게 지도자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수준의 장애인 자조단체들의 정책과 의사결정과정과 정부와의 옹호 및 자문역할 그리고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장애인의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8. 여성장애인은 자조단체들내에서 자조집단을 구성하며 지원과 정보를 보급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국적이고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9. 여성장애인의 집단과 네트워크들은 교육, 의료정보, 훈련, 사회개발에 특별한 주안점을 두어 여성장애인의 발전을 증진시켜야 한다.
10. 전국적이고 지역적인 여성장애인집단과 네트워크는 주류의 여성집단과 네트워크에 여성장애인, 그들의 자조집단과 관심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주류의 여성집단에 주장해야 한다.
11. 주류의 여성단체들은 그들의 훈련프로그램에 여성장애인들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히 이용가능한 형태의 훈련교재 뿐만 아니라 접근가능한 장소, 준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2. 정부, 민간단체, 자조단체, 후원기관,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은 항상 여성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고 지지해야 한다.

d.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방콕회의 초안 여성장애인편

<전문>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 (a) 모든 사람들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신, 또는 그 어떠한 지위 차이와 상관없이 보편적 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들에 담긴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다고 국가연합과 이들 선언 및 조약들이 선포하고 확인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Article 7>

권리 향유에서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평등

1. 국가는 장애를 가진 여성과 여성 아동은 복합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과 여성 아동이 남성과 남성 아동과 평등하게 [모든] [전체]인권과 근본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초점을 둔, 성-구체적 조치(보호 조치를 포함한)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2. 각 국가는 장애를 가진 여성과 남성이 이 조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차별금지 편 편성에 대한 차별금지팀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 오랜만에 차별금지팀 몇 분이 편의연대에 모였습니다. 모임에서는 그동안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요, 화요일에 논의했던 내용을 분류해본다면 크게 1)향후일정, 2)우리 팀이 초안을 만들어야 하는 법안내용 구성, 3)법안 초안일정입니다.

1.

일정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것이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것이므로 초안 마련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초안은 다음달 초순까지는 만들기로 했고요, 초안이 만들어지면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차별 사례를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2.

법안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만들 법안이 차별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므로 연구소 법안을 초안으로 하고 열린 넷 법안을 참고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차별에 대한 내용만 하는 것으로 하며 방법가지는 내용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 내용에는 "~는 차별이다" 정도까지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3.

정의에 있어서 연구소 안처럼 각 영역별로 정의를 별도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들 때 국제조약 등 제정의 추이를 보며 이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준용규정을 영두에 두기로 했습니다.

4.

장을 구성하는데 지역사회생활을 없애며, 이동과 시설접근권을 분리하고, 의사소통권과 정보접근권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가족·성 및 사생활', '정치·시민생활', 문화예술을 신설·보완하였으며, 재화와 용역에서 시설은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1)노동, 2)교육, 3)이동권, 4)시설접근권, 5)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6)재화와 용역(의료포함), 7)가족·성 및 사생활, 8)정치·시민생활, 9)문화·예술(미디어 포함), 10)사법행정절차입니다.

5. 이 구성에 따라 다음주말까지는 아래와 같이 정리를 맡으신 분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성에 따른 담당자는 논의 과정에서 추천된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 1)노동-남용현, 양병호, 김주현 등
- 2)교육-김주영, 양병호, 김주현 등
- 3)이동권-배용호 등
- 4)시설접근권-배용호 등
- 5)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김철환, 양병호 등
- 6)재화와 용역(의료포함)-김동원 등
- 7)가족·성 및 사생활-조은영, 김광아, 김주현 등
- 8)정치·시민생활-안선영, 이남진 등
- 9)문화·예술(미디어 포함)-정하균, 조은영 등
- 10)사법행정절차-윤정기 등

▷ 위 내용을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영역별 법안 초안을 할을 담당자도 추천을 해주실 분이나 추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 영역별로 법률 초안은 다음 주 말(29일)까지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라며(차별금지팀 방에 자료를 올린다고 공지를 하고 법안 내용은 기타 자료실에)영역별로 구성된 분들끼리 논의를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셨으면 합니다.